

##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1월 17일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



### 1. 제안이유

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재단 사장의 자격조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비전문가가 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,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생태계를 이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자격조건을 제한하여 지역의 문화산업발전과 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문화재단 사장의 자격조건을 “지역문화기획, 문화예술 또는 공연예술 분야”의 전문가에서 “공연예술분야”의 전문가로 변경함(안 제7조제3항).

나.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함(안 제9조제2항).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(을지로6가 18-14) 의회사무과
- 전화 : 02)3396-8157   팩스 : 02)3396-9055
- E-mail : mnslove@junggu.seoul.kr

##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지역문화기획, 문화예술 또는 공연예술”을 “공연예술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시민친화국장
4. 행정지원국장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임원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, 사장은 <u>지역문화기획, 문화예술 또는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</u>로 임명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제9조(이사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자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행정관리국장</u></p> <p>4. <u>기획재정국장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7조(임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 <u>공연예술</u> 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이사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시민친화국장</u></p> <p>4. <u>행정지원국장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2004.7.10 조례 제613호  
 개정 2005.3.25 조례 제635호  
 개정 2005.10.31 조례 제690호  
 개정 2006.5.15 조례 제704호  
 (일부개정) 2007.07.02 조례 제 761호  
 (일부개정) 2010.10.27 조례 제 895호  
 (일부개정) 2014.12.31 조례 제1240호  
 (일부개정) 2016.03.09 조례 제1305호  
 (일부개정) 2018.12.28 조례 제1441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“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설립)** 재단은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**제4조(재단의 사업)**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구“라 한다)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
2.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3.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·보급 및 조사·연구
4.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“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5.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**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**제6조 (정관)**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과 명칭
2. 사무소의 소재지
3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4.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
5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
6. 제4조 각호에 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
7. 공고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9.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정사항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7조 (임원)**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
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.

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, 사장은 지역문화기획, 문화예술 또는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임명한다.

④ 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⑤ 당연직이 아닌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.

**제8조 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·감독을 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당연직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재단을 통할한다.

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9조(이사회)**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자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.

1. 구청장
2. 사장
3. 행정관리국장
4. 기획재정국장

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의무를 통할한다. 다만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당연직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(개정 2006.05.15)

**제10조(운영재원 등)**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(개정 2011.6.7)

**제11조(수익사업)**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.

**제12조(사업연도)**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.

**제13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**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**제14조(결산서의 제출)**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 삭제**<2018.12.28.>

**제16조(보고·검사·감사)** ①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·감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대상범위, 기간 등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, 방문조사, 검사 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.

**제17조 (공무원의 파견)**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**제18조 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(경과조치)**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③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 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.

**제3조 (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)** 재단 최초 설립시에는 구청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·확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(2005.10.31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2006.05.15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부 칙(2007.07.02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10.27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6.7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12.31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3.9)<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0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~② 생략

③ 『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“충무아트홀” 을 “충무아트센터” 로 한다.

④~⑤ 생략

부 칙<조례 제1441호, 2018.12.2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